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 발의연월일: 2020. 6. 29.

발 의 자 : 임오경·전용기·양이원영

윤재갑 • 이병훈 • 김경만

고영인 · 권인숙 · 홍성국

이원택 · 박성준 · 정청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변조나 도용의 우려가 있는 현재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쓰는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

업'을 발주하는 등, 정부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37조제8호).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확인 및 제시 요구의 경우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제8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 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 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 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

- 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 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 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 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제2

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증을 발급받은 자가 모바일 주
	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제공받는 암호화된 주
	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모바
	일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u>있다.</u>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확인 및 제시 요
	구의 경우 주민등록증 대신 모
	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u>있다.</u>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의2. (생 략)
- 8. 다른 사람의 <u>주민등록증</u>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9. 10. (생략)

제37조(벌칙)
1. ~ 7의2. (현행과 같음)
8 <u>주민등록증</u>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u>다)</u>

9. • 10. (현행과 같음)